(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22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28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재단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② 재단은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직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모성보호휴가) 3항,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모성보호휴가)
③ 재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 직원이 태아검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표5]에 따라 주어야 하고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별표6]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1(특별휴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1(특별휴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특별휴가 지침을 내려준 경우 대표이사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의 결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화성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임산부의 보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재단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휴가허가기준

구분	허가기준
임신 28주 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부터 36주 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재단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산・사산 휴가허가기준

임신기간	허가기준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